

학교법인 한길학원 정관

규정관리번호	1
--------	---

제정 1979. 01. 01.	개정 1981. 03. 01.
개정 1981. 10. 16.	개정 1983. 12. 22.
개정 1986. 06. 24.	개정 1991. 03. 25.
개정 1991. 06. 25.	개정 1992. 09. 01.
개정 1997. 03. 12.	개정 1998. 03. 13.
개정 1998. 05. 01.	개정 2000. 03. 01.
개정 2001. 03. 31.	개정 2001. 04. 30.
개정 2002. 09. 01.	개정 2004. 02. 09.
개정 2005. 04. 08.	개정 2005. 07. 06.
개정 2007. 12. 18.	개정 2008. 08. 12.
개정 2009. 07. 13.	개정 2009. 08. 31.
개정 2011. 01. 27.	개정 2011. 08. 23.
개정 2011. 11. 20.	개정 2013. 04. 26.
개정 2014. 01. 01.	개정 2014. 02. 20.
개정 2014. 04. 22.	개정 2014. 08. 21.
개정 2015. 01. 08.	개정 2015. 05. 06.
개정 2015. 11. 27.	개정 2016. 07. 08.
개정 2016. 08. 19.	개정 2017. 11. 01.
개정 2018. 01. 01.	개정 2018. 03. 23.
개정 2018. 10. 26.	개정 2019. 08. 01.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10. 20.
개정 2021. 09. 01.	개정 2021. 12. 17.
개정 2022. 09.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길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부천전문대학(교명은 부천대학교라 한다) <개정 2011.11.20.>
2. (삭 제)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에 둔다. <개정 2014.01.01.>

제5조(정관의 변경)

- 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7.08.]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
2. 정관 제21조에 따른 임원선임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3. 정관 제42조에 따른 직위해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무
4. 정관 제58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관한 사무

② 이사회는 정관 제21조의 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07.08.>

1. 부동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3.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등)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하고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08.>](#)

- ⑤ 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 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1.08.>](#), [<개정 2020.10.2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20.10.20.\]](#)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3절 예산·결산 자문 위원회 <삭제>

제13조 ~ 제17조 삭제 [<개정 2008.08.12.>](#)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8.08.12.>](#)
2. 감사 2인(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감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8.08.12.>](#)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8.12.>
- ② <삭제 2014.04.22.>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개정 2008.08.12.>,<개정 2011.11.20.>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방법)

- ①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 및 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08.12.>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8.08.12.>
 -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08.08.12.>,<개정 2011.11.20.>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1. 법인 설립자 및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법인 임원(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3.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신설 2020.10.20.>

제20조의3(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추천위원회는 부천대학교에 둔다.<신설 2008.08.12.>,<개정 2011.11.20.>
 -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08.12.>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08.08.12.>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신설 2008.08.12.>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08.12.>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 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4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개정 2020.10.20.>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8.08.12.>

⑤ <삭제 2014.08.21>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8.08.12.>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8.08.12.>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1.12.17.>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1.12.17.>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1.12.17.>

제21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12.17.>
3.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12.17.>
4.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12.17.>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5.01.08.]

제21조의3(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임원이 정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2008.08.12.>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8.08.12.>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제29조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 ② <삭제 2014.08.2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08.21.>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08.12.>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08.12.>
-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08.12.>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08.>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8.12.> <개정 2015.01.08.>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08.12.>, <개정 2020.10.20.>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08.12.>, <개정 2020.10.20.>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8.12.>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신설 2008.08.12>

제3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부천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대학교

내에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1.20.>

제31조의3(대학평의회의 구성 등)

① 평의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교 교원·직원·조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임명)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평의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20.>, <개정 2020.10.20.>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10.20.]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성하는 자로서 자격기준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교원 4인 :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개정 2020.10.20.>
2. 직원 2인 : 사무직원 중 10년이상 근속직원
3. 조교 1인 <개정 2020.10.20.>
4. 학생 1인 : 총학생회장 <개정 2020.10.20.>
5.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개정 2020.10.20.>

제31조의5(평의원의 위촉절차)

①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 별 평의원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자 중 총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09.07.13.>

② 각 구성단위 별 평의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원대표 평의원추천위원회 : 각 학과별 1인씩 추천한 추천위원과 행정부서 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20.>, <개정 2020.10.20.>
2. 직원대표 평의원추천위원회 : 행정부서 처·원에서 1인씩 추천한 추천위원과 행정부서 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20.>, <개정 2020.10.20.>
3. 조교대표 평의원은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4. 학생대표 평의원은 총학생회장인 학생을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5.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은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07.13.>, <개정 2020.10.20.>

③ 교원대표 및 직원대표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세부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7.13.>

제31조의6(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7(소집)

① 평의회의 회의는 이사장, 대학교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11.20.>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1.08.>

제31조의8(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0.>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0.>
4.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0.>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0.>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9(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7.13.>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인)

- ① 전 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20.>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1.11.20.>

제35조의2(기록물 관리)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1.20.>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개정 2016.07.08.>

제37조(임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8.08.12.>, <개정 2014.04.22.>, <개정 2014.08.21.>, <개정 2016.07.08.>
-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8.12.>
- ③ 제1항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전임교원의 징계 이외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총장은 위임된 임용권 행사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07.13.>, <개정 2014.08.21.>, <개정 2016.07.08.>, <개정 2016.08.19.>, <개정 2019.08.01.>, <개정 2021.09.01.>
- ④ 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2.>, <개정 2009.07.13.>, <개정 2011.11.20.>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제목개정 2016.07.08.]

제37조의2(교원의 계약제임용 등)

- ①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제44조의5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08.>
 -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라. (삭제) <개정 2013.04.26.>
 - 마. 강사,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9.08.01.>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07.08.>

제37조의3(신규채용 등)

-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교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 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된 교원이 당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교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0.>
-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대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개정 2011.11.20.>

⑤ 이사장은 대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최소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8.12.>,<개정 2011.11.20.>,<개정 2013.04.26.>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교원신규채용을 위한 신문 공고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08.12.>,<개정 2009.07.13.>

제37조의4 <삭제 2014.01.01.>

제37조의5(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필요시 제37조의 3과는 별도로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20.>,<개정 2014.02.20.>

② <삭제 2014.02.20.>

제37조의6(강사 및 겸임교원 등)

① 대학교의 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연구 및 기타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3.>, <개정 2011.11.20.>, <개정 2014.04.22.>, <개정 2019.08.01.>

② 강사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6, 제37조의9 및 제37조의10의 규정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08.01.>

1.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신설 2019.08.0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신설 2019.08.01.>

[제목개정 2019.07.01.]

제37조의7(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 ①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1.20.>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0.>, <개정 2021.09.01.>
- ③ 삭제 <개정 2005.07.06.>

제37조의8(교원의 정수) 교원 중 교수의 정수는 학생편제정원에 따른 교원 정수의 17% 이내로 한다.

<신설 2005.07.06.>, <개정 2007.12.18.>, <개정 2016.07.08.>

제37조의9(교원의 임무)

-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봉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만 전담할 수 있다.
 1. 강의
 2. 산학협력관련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3. 강의 및 학생 지도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08.]

제37조의10 <삭제 2020.10.20.>

제37조의11(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53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3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본조신설 2020.10.20.]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개정 2016.07.0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27.>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5.01.08.>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5.01.08.>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5.01.08.>,<개정 2017.11.0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07.08.>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1.11.20.> <개정 2015.01.08.>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15.01.08.>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15.01.08.>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11.0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5.01.08.>,<개정 2016.07.08.>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6.08.19.>

2. 제38조제1항의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08.19.>

3.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개정 2016.08.19.>

4.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19.>

5.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9.>

6. 제38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19.>, <개정 2020.10.20.>, <개정 2021.09.01.>

7.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19.>

제40조(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38조제1항의 제1호 와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연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연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08.19.>
- ② 제38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8.19.>

제41조의2(육아휴직수당) 정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절차, 금액 등은 대학보수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7.0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 따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개정 2017.11.01.>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 ③ 제1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도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07.08.>, <개정 2016.08.19.>
-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07.08.>

- ⑤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 ⑥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늑우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7.08.>,<개정 2019.12.20.>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직무 성과 등을 감안하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04.22.>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 2(명예퇴직 등)

- ①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 ② 학과의 폐지·통합 등으로 전공불일치, 학과 과원 등 학교 경영상의 이유로 20년 미만 근무한 교원이 스스로 퇴직할 경우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8.21.>
- ③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08.21.> [제목개정 2014.08.21]

제44조의3(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27.]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11.27.>]

제44조의4(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종전 제4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 4는 제44조의 5로 이동 <2015.11.27.>]

제44조의5(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4조의4에서 이동 <2015.11.27.>]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20.>

제4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0.>, <개정 2013.04.26.>, <개정 2014.04.22.>, <개정 2016.07.08.>
 2. 교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4.04.22.>
-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37조의2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제37조의2의제1항제4호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6.07.08.>

제47조(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07.06.>, <개정 2009.07.13.>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2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09.28.>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07.08.>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07.08.>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53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1.12.17.>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12.17.>
- ④ 교원징계위원회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07.08.>
 [제목개정 2016.07.08.]

제53조2(외부위원의 임기 등)

-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본조신설 2016.07.08.]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징계의결의 기한)

-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

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15.01.08.>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01.08.>

제5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6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1.>

제56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제5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7.08.>

제58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개정 2019.12.20.>

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01.08.>, <개정 2016.07.08.>

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

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⑦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제58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로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②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개정 2021.12.17.>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④ 임용권자가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본조신설 2015.11.27.], [제목개정 2021.12.17.]

제59조(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정관 제58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정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20.]

제59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0.]

제59조의3(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대학규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정관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개정 2022.09.28.>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학교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

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59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08.08.12.>, <개정 2014.02.20.>, <개정 2015.11.27.>, [제목개정 2015.11.27.]

<개정 2018.10.26.>

②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01.08.>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01.08.>, <개정 2016.07.08.>, [제59조의2에서 이동 2019.12.20.]

제59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07.08.], [제59조의4에서 이동 2019.12.20.]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1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관 재심위원회

제62조 내지 제75조 (삭제)

제2절 직원 및 조교

제76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사무직원과 기술직원 및 기능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01.01.>, <개정 2019.12.20.>, <개정 2022.09.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원 및 기능직원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8.19.>, <개정 2019.12.20.>

제77조(임용)

- ① 일반직원의 “임용(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또는 근무성적 기타 업무능력을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7.08.>, <신설 2021.12.17.>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 여 : 업무의 난이도, 경력,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6.07.08.>
 3. 근무조건 및 절차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직무성과 등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고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개정 2014.04.22.>

제8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단, 일반직원의 정년과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7.13.>, <개정 2014.02.20.>, <개정 2014.04.22.>

제80조2(당연퇴직)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6.07.08.]

제81조(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① 일반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일반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81조의2(조교)

① 조교의 정원·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교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5.01.08.]

제81조의3(계약직원 등)

①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의 정원·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81조의4(일반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2조(법인 및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04.22.>

② 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팀)와 경리과(팀)를 두며 각 과(팀)장은 4급, 5급,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04.22.>

③ 업무의 양에 따라 사무국에 과(팀)의 구분없이 직원만을 배치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4.22.>

제2절 대학

제83조(총장 등)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07.13.>, <개정 2011.11.20.>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07.13.>, <개정 2011.11.20.>
-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9.08.31.>, <개정 2011.08.23.>, <개정 2011.11.20.>, <개정 2014.01.01.>
<개정 2014.08.21.>, <개정 2015.05.06.>
- ④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신설 2009.08.31.>
-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직제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부총장을 둘 경우에는 부천대학교 직제규정에서 부총장의 명칭, 총장 직무대행 순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31.>, <개정 2011.08.23.>, <개정 2014.01.01.>, <개정 2014.08.21.>, <개정 2015.05.06.>, <개정 2015.11.27.>
- ⑥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처와 비서실을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9.12.20.>
- ⑦ 기획처에는 소속부서를 둘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 ⑧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업단, 센터,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제84조(하부조직)

- ① 대학교에 교육혁신처, 학생성공처, 취창업처, 행정처를 두고, 각 처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처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개정 2013.04.26.>, <개정 2014.01.01.>, <개정 2014.08.21.>, <개정 2015.11.27.>, <개정 2016. 8. 19.>, <개정 2018.01.01.>, <개정 2018.03.23.>,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 ② 각 처별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각 처에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속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01.>, <개정 2014.08.21.>, <개정 2015.11.27.>,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 ③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08.21.>, <개정 2015.11.27.>,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 ④ 각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1.27.>,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 ⑤ 각 처에는 업무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27.>,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제85조(부속기구)

-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0.>
- ② 부속기구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구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01.01.>, <개정 2018.10.26.>,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 ③ 부속기구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구에는 필요한 소속부서를 둘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 직원으로 보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26.>, <개정 2019.12.20.>, <개정 2021.12.17.>

제85조의2(부설기구)

-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부설기구에는 각각 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26.], <개정 2019.12.20.>

제85조의3(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26.]

제85조의4(학교기업)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26.]

제86조 <삭제 2014.08.21.>

제87조 <삭제 2014.08.21.>

제3절 고등기술학교 (삭제)

제87조 내지 제 88 조 (삭제)

제4절 정원

제89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12.20.>

제8장 보칙

제8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8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이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한 항 길	1900. 07. 18	4 년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60
이 사	김 명 근	1901. 04. 05	4 년	서울시 강남구 잠실2동아파트 508동 101호
이 사	한 방 교	1929. 10. 22	4 년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68
이 사	김 진 태	1931. 01. 03	4 년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0-14
이 사	손 우 성	1904. 12. 06	2 년	서울시 동대문구 235-4
이 사	황 수 철	1933. 06. 21	2 년	충북 청주시 내덕동 649-9 (9통 4반)
이 사	윤 희 천	1929. 03. 02	2 년	경기도 인천시 남구 용현동 409
감 사	박 찬 동	1931. 12. 17	2 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97-317
감 사	장 태 진	1903. 02. 19	1 년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277-2

부칙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조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하부조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1997.1.31.경기도교육청 행정81411-157호로 폐지인가)에 소속되었던 시설 및 재산관리는 학교법인 한길학원에 귀속되고, 직원은 1999년 3월 1일부로 부천대학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신규교원의 계약제임용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약제임용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 ④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0, 제4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9조의2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휴직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⑤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44조의3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84조,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85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위촉된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관하여는 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7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84조,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제77조제1항, 제80조의2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3항, 제53조제3항, 제5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1조의4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개정 2011.11.20.>,<개정 2014.04.22.>

법인 사무조직 정원

총 계 : 9인

사무직계	7인
3급 (국장)	1인
4급 (부국장)	1인
5급, 6급 (팀장)	2인
7급 (부팀장)	1인
8급, 9급 (주무관)	2인

기능직계	2인
9 등급계 (부기능장)	1인
10 등급계 (기능원)	1인

(별 표 2)

<개정 2005.08.30.>, <개정 2007.12.18.>, <개정2011.01.27.>, <개정2011.11.20.>, <개정 2014.04.22.>
<개정2016.07.08.>, <개정 2018.01.01.>

학교 사무조직 정원

1. 대학

총계 : 80인

총계	80인
사무직계	60인
기술직계	16인
기능직계	4인

2. 고등기술학교 “(삭 제)”